

사천 선인지구 S-4BL 한림폴에버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제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선인지구 S4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17층 개동 총 5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 10% 범위 내)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총 세대수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등)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84	84.7700	27.3200	112.0900	67.7800	179.8700	321	32	2029년 10월 (예정)

※ 상기 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사천시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예비입주자) 내역

[단위 : 세대]

구분	장애인			국가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84	4 (20)	4 (20)	4 (20)	3 (15)	3 (15)	3 (15)	11 (55)	32 (160)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괄호() 안의 표시는 예비대상자 세대수입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분양일정 (예정)

구분	예정일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6.11.19.(목)	사천선인 한림폴에버(가칭) 홈페이지 (http://www.사천선인한림폴에버.co.kr)
특별공급 접수	2026.11.30.(월)	인터넷 청약접수(09:00~17:30)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App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6.12.08.(화)	한국부동산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App 조회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 에 따라 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확정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합니다.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전용면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사천시 및 경상남도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아닌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3.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 월)내에 있는 자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행정사항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4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청약홈)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6.11.19.)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5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체결불가, 부적격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제한이 있습니다.]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	모두 부적격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공급대상 등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6.11.19.(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자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사이버건본주택 (<http://www.사천선인한림폴에버.co.kr>)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사업지 및 건본주택 위치	분양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사천선인한림폴에버.co.kr ○ 건본주택 주소 :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19-20번지 ○ 대 표 번 호 : 055-854-9600